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 【2022. 9. 19.(월) 10:00】

####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9월 19일 전문위원 배 금 택

####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2022 - 76

나. 발 의 자: 김민석 의원 외 4명

다. 발의일자: 2022년 8월 26일

라. 회부일자: 2022년 9월 5일

#### 2. 제안이유

- 김포공항은 향후 첨단항공산업 및 도심형항공모빌리티(UAM) 등 국제도시 서울의 글로벌 관무이자 미래교통 인프라이나.
- 최근 코로나로 항공 산업 생태계가 위기에 몰리며 공항인근 및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항공사들이 본사를 강서구 외의 타 지역 으로 이전하는 등 공항 내 정치장 등록 대수가 줄면서 구의 세수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김포공항을 주 무대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항공 산업 생태계의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인 항공사업자의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김포공항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항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항공사업자가 재정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 라. 예산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지원 결정 시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지원금을 중단·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항공사업법」제65조

나. 협조부서: 교통행정과

다. 입법예고(2022. 8. 30. ~ 9. 5.)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가. 법적 근거 및 타당성

○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항공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항공사업법(이하'법')」제6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업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은 동 조례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재정 지원을 통해 김포공항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 안 제2조(정의)는 용어를 정의함과 동시에 지원대상이 되는 "항공사업자"의 요건을 "김포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국제·국내 정기편을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는 자"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지원을 지양하고 지원 대상을 한정함으로서 재정지원 효과를 확보하고자 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은 항공사업자가 김포공항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김포공항 정기편 운항의 손익분기점 미달로 인한 손실보전금 및 신규 정기노선 개설에 따른 운항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개 항공사에 지원할 수 있는 보전한도액이나 지원 폭 및 지원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5조(지원신청)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의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국제항공노선을 개설하려는 항공 사업자는 운항기간, 횟수, 운임, 탑승인원, 기종과 좌석 수 등이 포함되는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지원기준에 부합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후 각 지원 항목에 맞는 신청서류 목록과 지원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임.
- 안 제6조(지원결정)은 서울시민과 강서구민의 교통편익, 김포 공항 정치장 등록,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을 결정하도록 규정함. 향후 지원결정 과정에 있어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제9조는 재정재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반환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 안 제11조(업무의 위탁)은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 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김포공항 기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제공 함으로써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항공 사업 회복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최근 코로나19의 재 유행으로 항공사의 노선 증편 결정에 있어 상대국의 방역 규제 수준이 중요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국제선의 경우 국가 간 운항협정, 제도적 규제(슬롯 제한 및 취항가능 거리 제한, 현재 2,000km) 및 국토부의 항공사 운수권 배분 문제 등의 이슈가 다양 하게 맞물려 있는 만큼 본 조례가 가져올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또한 김포공항은 생활권 내에 위치한 교통수단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한 수도권 도심공항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타 지자체의 조례1)를 비교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동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됨.

#### 1) 국내선 공항별 재정지원 현황

7 11112 002 110112 20						
구분	사천	울산	여수	포항・경주	원주	군산
지원 범위	손실보전	손실보전 시설사용료	손실보전	운항장려	운항장려	손실보전 시설사용료
지원 기준	탑승률 70%미만 및 결손금 70% 이내 충족 시	항공사별 손실액 30% 이내	반기 · 노선별 손실액 30% 이내	운항: 편당 456천원 탑승: 편당 탑승률 50% 초과율×1,667천원	운항항공사 지원	과거 김포노선 손실액과 비교하여 편당 지원
지원 규모	'19년까지 최대 1억원	항공사별 최대 4억 시설사용료 2억원 별도	노선별 2억(반기 36회 운항 전제) 여수시 (7천만원 별도)	운항 인센티브: 10억원 이내 탑승 인센터브: 10억원 이내 실시협약	최대 3억원 월별지원 실시협약	예산범위 내 지원 실시협약
'21년 예산 (분담율)	10억원 경남(50%) 사천(25%) 진주(25%) 분담	18억원 울산시 (100%)	10억원 전남도 (100%) 여수시 (7천만원 별도)	20억원 경북(30%) 포항(60%) 경주(10%) 분담	3억원 강원(70%) 원주(25%) 횡성(5%) 분담	3억원 전북(50%) 군산(50%) 분담
운항 구간	서울, 제주	서울, 제주	서울, 제주	서울, 제주	제주	제주

#### 참고1

#### 김포공항 관련 일반 현황

#### ☑ 김포공항 현황

○ 위치/면적 : 서울시공항동일원(인천, 부천)/8,440,923㎡(서울 7,253,942㎡)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약 98%), 개발제한구역(약 84%), 최고고도지구, 공항

○ 주요시설 : 활주로(2), 계류장(73), 여객청사(2), 스카이파크(롯대몰), 골프장(27홀)

○ 운영현황(연간) : 국내선 +국제선(10노선 6명회 1.124명명)

○ 공항철도 : 지하철 5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 지하철 9호선, 김포 도시철도

※ 수도권 전철 서해선(2023년 개통 예정)

#### □ 김포공항 연혁

○ 1939년 : 일본군 김포비행장으로 개항

○ 1942~1957 : 군용비행장으로 사용

○ 1958. 1. : 김포국제공항 확장(여의도 공항 합류)

○ 1958. 4. : 정식 국제공항으로 지정(당시 행정구역명 김포군)

○ 2001. 3. : 인천공항 개항으로 국내선만 운영

○ 2003. 6. : 한·일 정상회담(김포~하네다 노선 개설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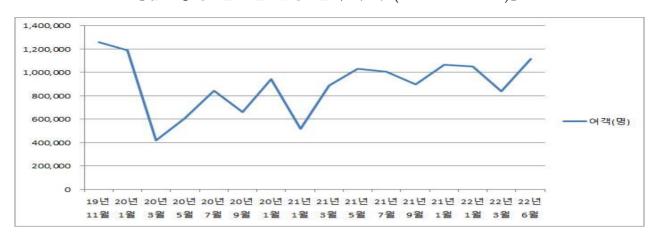
○ 2003.11. : 김포~하네다 전세기 취항으로 국제공항 지위 회복

#### □ 코로나 전후 연간 김포공항 운항 실적

연도	공급석	운항(편)	여객(명)
2018	16,582,839	80,761	14,419,507
2019	16,880,073	80,401	14,822,924
2020	11,558,171	58,528	8,965,606
2021	13,409,950	69,538	11,246,794

<sup>※</sup> 국내선 출발+도착, 국제선 출발+도착 기준

【김포공항 연도별 운항 실적 추이 ('19. 11 ~'22. 6)】



【김포공항 운항·여객 실적 ('22. 6월 말 기준)】

(단위: 편, 명, %)

구분		'21.6월	'22.6월	전월 동월 대비 <del>증</del> 감율	'21년 누적	'22년 누적	전년 누적 대비 <i>증</i> 감율
0	국내	6,082	6,228	2.4	32,470	36,827	13.4
운	국제	12	14	16.7	54	73	35.2
항	합계	6,094	6,242	2.4	32,524	36,900	13.5
O.	국내	1,020,436	1,101,794	8.0	5,227,417	6,121,381	17.1
여	국제	1,290	1,866	44.7	5,430	11,065	103.8
객	합계	1,021,726	1,103,660	8.0	5,232,847	6,132,446	17.2

#### 【김포공항 국제선 운항·여객 실적 ('22. 6월 말 기준)】

(단위: 편, 명, %)

구분	운항			여객		
丁正	'21.6월	'22.6월	증감율	'21.6월	'22.6월	증감율
일 본	_	6	순증	_	348	순증
한 국	12	8	-33.3	1,290	1,518	17.7
합 계	12	14	16.7	1,290	1,866	44.7

#### ☑ 정치장별 항공기 등록현황

공 항	대(수)	공 항	대(수)	공 항	대(수)
인 천	97	청 주	55	울 산	9
김 포	200	양 양	16	군 산	_
김 해	36	무 안	42	포 항	7
제 주	77	광 주	4	원 주	5
대 구	5	여 수	_	사 천	4

### 참고2 타 지자체 '항공산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 현황('22.8. 기준)

○ 서울시 : '19.5.16. 제정 공포

○ 타시도 : 강원도 외 23개

○ **자치구** : **고성군 외 6개** ※ 서울시 자치구는 사례 없음.

연번	법 령 명	시행일자	부 서
1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12.31.	
2	강원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2020.12.31.	
3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 <del>를</del> 위한 재정지원 조례	2021.11. 4.	서부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
4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2020.11. 5.	
5	경상북도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4.19.	
6	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2020.11.18.	교통행정과
7	고성군 시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2020.12.30.	도시교 <del>통</del> 과
8	광양시 여 <del>수공</del> 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2021.12.31.	
9	광 <del>주광</del> 역시 지역공항 활성화 <del>를</del> 위한 재정지원 조례	2019. 3.15.	
10	군산시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2014.12.16.	교통행정과
11	남해군 시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2020.12. 8.	건설교통과
12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2019.10.10.	
13	대전광역시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2018. 8.10.	
14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8.13.	미래전략과 철도공항팀
15	시천시 시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2020.10. 5.	민원교통과
16	산청군 시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2019.12.26.	경제교통과 교통정책담당
17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2019. 5.16.	교통정책과
18	순천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2016. 3. 9.	교통과
19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9.18.	전략교통과
20	여수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2019. 3.14.	교통과
21	울산광역시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2011.11. 7.	광역교통정책과
22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2015. 1. 2.	교통행정과
23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2022. 7.29.	
24	전라남도 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	2021. 7.29.	도로교통과
25	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2015. 5. 1.	
26	진주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2019. 3. 8.	교통행정과
27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2015.10. 8.	
28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2015.10.30.	도로철도항공과
29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2021.12.17.	
30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2021. 6. 1.	대중교통과
31	하동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2019. 7. 1.	건설교 <del>통</del> 과
32	횡성군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2002.11. 5.	

#### 붙임 관계 법령

#### □ 항공사업법 제65조

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는 항공사업을 진흥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소 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 1. 전쟁·내란·테러 등으로 항공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 2. 항공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업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 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